

군사정권 시기 금지곡의 선율적 특성에  
관한 연구:  
왜색가요로 분류된 작품을 중심으로

박기선  
(동아대학교 박사수료)

1. 들어가며
2. 박정희 군사정권의 상황과 왜색가요
3. 연도별 금지항목의 변화
4. 왜색가요로 분류된 금지곡의 특징
5. 나가며

## 개 요

본고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의 가요 금지곡 중에서 왜색가요로 분류된 노래들에 관한 분석이다. 일본에서 유입된 ‘요나누키(또는 미야코부시) 음계(주로 단음계)가 왜색을 상징하는 낙인으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에 이 논문은 문제를 제기한다. 연구자는 이른바 왜색이라는 사유로 금지된 가요들이 과연 요나누키 음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요나누키 음계가 아님에도 전통적인 음계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인되었던 부분들은 없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시기의 금지곡들을 분석하였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집권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의 정권은 한일수교 이후 발생한 국민의 반일 감정을 달래기 위해 금지곡들을 활용했던 측면이 강하다. 즉, 이 시기의 대중가요에 대한 정책은 선전·선동을 위한 중요한 매체로 활용되었고, 그는 정권 유지를 위해 건전가요를 장려했으며, 통치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금지곡은 배제되었다. 이러한 행적은 박정희의 친일 이력과 무관하지 않으며 ‘금지곡 지정행위’는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연구자는 박정희 정권의 왜색금지가 이념이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나타난 심의기구의 금지항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비공개 심의본’의 가사 철에 ‘곡 왜색’으로 수록된 ‘33곡’을 발췌해서 선율구조를 분석하여 전통선율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 전통음계인 ‘미야코부시 음계(요나누키 단음계)’로 만들어졌다고 문제 삼은 금지곡들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선율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부분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문제 삼아 왜색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은 과도한 정치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주제어: 박정희, 군사정권, 대중가요, 왜색가요, 요나누키, 금지곡

## 1. 들어가며

대중가요에 대한 검열과 통제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통제와 정책은 원활한 식민지 통치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여러 법령이 만들어졌으며 일제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음악 교재, 공연, 레코드, 교육방식 등을 통제했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위해 1908년에 학부령(제16호), 「교과용 도서검정규정」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음악 교과서를 통제했고, 일반 노래책의 경우는 1909년 「출판법」<sup>1)</sup>을 통해서 규제했다. 1910년에는 제령 제3호 「집회취재령」을 발령하여 공연의 자유까지 침해했다. 대중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인 레코드 시장이 거대해지면서 일제는 1933년 부령 제47호 「레코드 취체규칙」을 통해 사전허가와 함께 자신들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음반의 압수 또한 가능하게 만들었다.<sup>2)</sup> 특히, 출판법은 다른 규제에 비해서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전검열은 물론이고 판매전 납본 검열이 의무화돼 있는 이중적 장치로 통제를 했다. 이러한 출판법을 통한 규제로 인해 출판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었다. 이들은 식민지 통치를 유용하게 하고자 하는 통제장치로 이용되었으며 해방 이후 여러 독재정권에 의해 모방되었는데 박정희 정권에 집중되어 있다.

1) 1909년 2월부터 일제는 '출판법'을 발효시키고 강한 제재를 했다. '출판법'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문서·도화를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원고를 지방장관(한성부에서는 경시총감으로 함)을 경유해 내부대신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한 저작자·발행자는 다음과 같이 처단함. ① 국교를 저해하거나 정체를 변괴(變壞)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하는 문서·도화를 출판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② 외교와 군사의 기밀에 관한 문서·도화를 출판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③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壞亂)하는 문서·도화를 출판한 때는 10개월 이하의 금고.

제13조 내부대신은 본법을 위반해 출판한 문서·도화의 발매 또는 반포를 금지하고 해당 인쇄물을 압수함. 부길만, 『한국 출판 역사』(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75-76.

2) 문옥배, 『한국 금지곡의 사회사』(서울: 예술, 2004), 16.

박정희 정권하의 음악 통제기구는 미디어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방송사에 대한 심의’와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가 있었다. 1962년 6월 ‘한국방송윤리위원회(이하 방윤)’가 설립되고, 1965년 음악방송에 대한 전문적인 ‘가요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시작했다. 1966년에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이하 예륜)’가 창립되었으며<sup>3)</sup> 1967년에는 노래 심의를 위한 「음반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문옥배에 따르면, ‘가요심의위원회’는 108곡에 대한 금지를 시작으로 1968년부터 가요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연법」이 1976년에 개정되어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윤)가 예륜을 대체하게 되고 「사전심의제」가 실시되어 음반을 통제하기 시작했다.<sup>4)</sup> 이러한 심의기구 중에서 공윤(왜색금지: 1건, 가사저속: 6건)은 예륜(왜색금지: 73건, 가사저속금지: 182건)에 비해 금지곡 지정에 대해 관련한 바가 크지 않음으로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당시, 가장 많은 금지 사유는 ‘왜색’과 ‘가사저속’이었다. 이 금지곡들 중에서 표절곡은 거의 일본곡과 관련된 것이며 미야코부시 음계<sup>5)</sup>와 창법에 의한 왜색곡으로 지칭된 가요들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다. ‘금지곡’ 탄생의 배경이 되었던 정치 상황에 관해서 우선 살펴보겠다.

## 2. 박정희 군사정권의 상황과 왜색가요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자신의 집권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큰 노

3) 문옥배, “해방 이후 정부의 음악통제 연구,” 『音樂論壇』 22 (2008), 2.

4) 문옥배, 『한국 금지곡의 사회사』, 18.

5) 대중가요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야코부시 음계는 상행과 하행이 다르다. 일본의 민요와 달리 한국의 대중가요는 상하행의 길을 전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하행이 동일한 요나누키(4,7음 생략) 단음계로 통일하여 논의한다면, 음계의 구조를 이해하기 쉬우므로, 본고에서는 요나누키 단음계(라, 시, 도, 미, 파)와 요나누키 장음계(도, 레, 미, 솔, 라)로 정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력을 했으며 음악 정책은 선전과 선동을 위한 주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전가요는 장려되었고, 정권에 부합하지 않는 텍스트들은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통제정치는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제 잔재 청산과 함께 민족주의를 내세웠으며, 우리 것을 중히 여기고 있다는 ‘민족 문화 장려 정책’으로 포장되었었다.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된 뚜렷한 목표를 두고 있었으며 그것은 ‘조국 근대화’로 표현된 경제발전 전략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는 국악장려, 국제 음악제 개최, 그리고 왜색금지라는 음악 정책을 내건 민족성의 고취와 국제적인 위상을 강조하는 문화적 정책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음악 정책은 일제강점기 음악 정책과 매우 유사한데 이는 다음과 같다.

[표 1] 일제강점기 음악 정책과 박정희 정권의 음악 정책<sup>6)</sup>

일제강점기	박정희 정권
1910 창가 교과서 보급	영웅화 업적과 찬가 보급
국민가요 개창운동 (다함께 부르는 노래)	국민가요 개창운동 (다함께 부르는 노래)
1930년대 후반 일본 파시즘에서 농촌의 이미지 강조 (농본주의 이데올로기, 황국신민가요)	70년대 새마을운동 (민요개창운동 추진)
1943년 조선 문예 구축 (가요정화운동)	건전가요보급사업, 퇴폐곡 금지 (가요정화 운동)

일제의 전체주의적인 교육과 이데올로기는 박정희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60년대 국민가요 개창운동이 추진되는데, 이는 ‘다함께 부르는 노래’ 운동으로서 개인의 취향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공동체주의를 강조한다. 노동운동의 조

6) 김은경, “박정희체제의 지배양식에 대한 비판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2010), 50-58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음.

사에 의하면 일본의 국민 개창 운동이 1940년대 가장 핵심적인 음악 정책으로서 “일본 천황폐하에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황국신민가요’이며 더욱 조선의 민족 대중들이 고통받은” 노래이다. 한편으로는 농본주의 즉,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새마을 새 노래를 만들겠다는 ‘민요 개창 운동’을 추진했다. 김은영에 따르면, 새마을노래는 범국민적 개창 운동이며 새마을운동은 ‘농촌 근대화’라는 목표로 세웠지만, 사실은 유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었으며 국민에 대한 프로파간다였다<sup>8)</sup>.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매우 혼란했고 국민들의 삶도 매우 어려웠으며 이러한 정국을 극복하고자 경제발전의 자금 마련을 위해 이루어진 한일협정체결<sup>9)</sup>로 정국의 혼란이 야기되면서 박정희에 대한 퇴진 운동으로 확대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다.<sup>10)</sup> 굴욕외교특위와 학생들의 반대 투쟁이 심했던 상황에서 경찰에 의해 구타당한 동국대 학생 김중배가 사망했으며<sup>11)</sup> 이에 국민들의 원성이 심해지자 당국은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다.

왜색가요에 대한 금지곡 지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박정희 정권의 심의기구인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추진해왔던 것을 계승해서

7) 노동은, 『“국민가요명곡집(國民歌謠名曲集) 해제,” 『낭만음악』 18 (1993), 243.

8) 김은영, “1960~1970년대 음악정치: 박정희체제의 음악정책과 노래운동을 중심으로,” 『음악과 현실』 60 (2020), 102.

9)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국과 일본 간의 조약이다. 해방 이후 우리와 일본은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가장 가까운 나라와 교류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컸다. 꾸준히 교섭이 이어졌으나 쉽게 해결점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1965년 한일 간의 외교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이때 일본 측은 식민지 수탈을 공식 시인하지도 않았고 그것과 관련한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협정 체결을 앞둔 1964년 3월 국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는 더욱 커져 6월 3일에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6·3사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0333&cid=62048&categoryId=62048>, 검색일: 2021. 4. 1.

10) 박찬호, 『한국가요사 2』 (서울: 미지북스, 2009), 467.

11) 박찬호, 『한국가요사 2』, 468.

사회 전반에서 왜색단속을 하였으며,<sup>12)</sup> 1961년까지도 경찰에 의한 ‘왜색음악 단속’이 지속되었다.<sup>13)</sup> 이러한 가운데 일제청산 과정에서 사라져가던 왜색가요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애상적이고 퇴폐적이며 복고적인 성향을 띠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4년 발표된 〈동백 아가씨〉는 방송에서 35주 동안 1위를 기록했고 백만 장 이상이 팔렸다<sup>14)</sup>. 1965년에는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국민의 반발을 누르고자 강도 높은 왜색금지정책이 추진되었다. 〈동백 아가씨〉는 소위 대표적인 왜색금지곡이었으며 이 노래의 제작자와 가수는 과도한 피해를 입었다. 양우석은 ‘한국전쟁 이전 트로트 가요의 선율’을 분석하여 우리가 왜색으로 느끼는 노래들에 ‘요나누키 단음계’ 외에도 전통선율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밝혔다.<sup>15)</sup> 그의 연구는 본고가 수행하고 있는 금지곡 분석에 도움을 주었음을 밝힌다. 아울러 이 논문은 박정희 정권의 금지곡들을 분석하여 왜색판정의 기준이 되었던 선율구조에 관한 인식들이 과연 정당했는지 논박하고자 한다.

1964년, 공보부<sup>16)</sup>는 ‘왜색 레코드판’을 단속기로 하고 내무부에 협조를 요

- 12) 국가기록원, “국무회의록,” 총무처, 1955년, 관리번호: BA0085175, <https://theme.archives.go.kr//next/cabinet/keywordSearchResultDescription.do?level=2&docid=0028640280>, 검색일: 2021. 4. 10.
- 13) 국가기록원, “퇴폐 일본음반 금지의 건(제8회),” 총무처, 1953년, 철번호: BG0000049, 건번호: 8-14, <https://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archivesDetail.do?eventId=0049286817&flag=2&page=2>, 국가기록원, “차방에서의 일본음반과 주류(위스키) 판매를 금지하도록 단속하여 주기 바란다(제12회),” 총무처, 1953년, 철번호: BG0000049, 건번호: 12-23, <https://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archivesDetail.do?flag=2&eventId=0049286816&page=>, 검색일: 2021. 4. 10.
- 14) 정진, “대중가요 작곡가 백영효의 작품 분석,” 『문화와 융합』 42 (2020), 635.
- 15) 양우석, “박시춘 작품의 음악적 특징: 한국전쟁 이전 작품을 중심으로,” 『음·악·학』 26 (2014), 71-76.
- 16) 법령의 공포, 언론 보도정보, 선진, 선진영화제작, 인쇄·정기간행물 및 방송에 관한 사무등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1948년 11월 공보처로 발족하여 1956년 2월 공보실로 개칭하였고, 그 뒤 1961년 6월 공보부로 개편하였다. “공보부,” <http://encykorea.aks.ac.kr/Contents/CategoryNavi?category=field&keyword=%EC%A0%95%EC%B9%98%C2%B7%EB%B2%95%EC%A0%9C/%EB%B2%95%EC%A0%9C%C2%B7%ED%96%89%EC%A0%95&ridx=67&tot=1052>, 검색일: 2021. 4. 10.

청했다.<sup>17)</sup> 이 시기 왜색곡에 대한 금지정책은 일관된 음악 정책이라기보다는 ‘임기응변’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박정희 정부는 왜색곡에 대한 정확한 개념설정을 간과하고 당시 방송심의세칙에 근거하여 “일본풍의 느낌이 나는 곡”을 왜색곡이라고 주관적인 판단과 정책으로 단속했다. 그들이 시행한 음악 정책은 한국 대중가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 3. 연도별 금지항목의 변화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어려운 시기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 당국은 10년간 계속되어온 한일협정의 타결을 서둘렀다. 이에 1964년 3월 야당과 각계 대표 2백여 명이 ‘대일 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해서 구국선언문을 채택했고 학생들은 단식 농성에 돌입했으며 서울 일원에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sup>18)</sup>

한일협정이 조인된 직후에는 ‘왜색가요’ 시비가 재현되고 1968년에는 금지곡의 수가 급증했다. 장기집권을 위해 1972년에 유신헌법이 제정되었으며 1975년은 최정점이었다.

1962년 설립된 방윤은 1965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1968년에는 음반가요의 심의검열이 사후심에서 예륜의 사전심의로 검열이 강화됐다. 예륜은 자율적 심의기관으로 출발했지만 사실상, 금지곡 지정의 주체이다. 그 이유는 예총의 자금 운용이 정부에 의해 충당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예륜의 심의는 편파적이었으며, 실무진은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륜의 위원장은 조연현 외에 예심위원 5인과 본심위원 6인이 위촉됐는데<sup>19)</sup> 음악인은 단 3명(김대현-작곡가/중대 교수, 김희조-작곡가/국립가무단장, 황문평-작곡가/

17) “왜색레코드 단속,” 『조선일보』, 1964. 2. 1.

18) 박찬호, 『한국가요사 2』, 467.

19) 김은경, “박정희체제의 지배양식에 대한 비판적 연구,” 225.

음악저작권협회)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두 기관에 의해 방송과 음반이라는 2개의 분야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됐다. 공윤은 1976년 5월 공연법 개정에 의해 발족되었다. 두 기구는 운영방식과 심의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금지곡의 종류와 수는 다르게 나타났다. 방윤은 방송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하였으나 예륜은 1968년, 1975년에 한시적으로 금지곡을 많이 지정했다<sup>20)</sup>.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보이며 방윤에 비해서 예륜은 노골적으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처하였다.

다음의 금지곡 지정에 관한 표를 살펴보면 왜색곡과 표절, 그리고 가사저속이 68년, 75년에 두드러지게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2] 박정희 정권 시기 심의기구의 금지곡 지정<sup>21)</sup>

연도	방송윤리위원회						예술윤리위원회(공륜:76년 이후)				
	작사자 월북	왜색	표절	창법 저속	가사 저속	방송 부적	작사자 월북	왜색	표절	창법 저속	가사 저속
1965	79	17	4		25						
1966		29	5	1	44						
1967		53	12	14	36						
1968		17	30	4	16			63	31	2	53
1969	16	8	19	5	12				8		
1970		35	18	8	17			1	9		
1971		38	13	22	6	10			1		
1972		23	11	11	9	8					
1973		21	12	11	2	12					
1974		3	4		5	2					
1975		6	9	13	145	9	77	10	11	13	129
1976		2	2	1							

20) 예륜은 전문위원이 없는 문공부로부터 10만 원의 지원으로 운영.

21) 권정구, “대중음악 금지곡 중 왜색과 표절의 관계 고찰: 비공개 심의원본자료를 중심으로,” 『음악과 문화』 39 (2018), 62에서 [표2] 재인용.

연도	방송윤리위원회					예술윤리위원회(공륜:76년 이후)					
	작사자 일북	왜색	표절	창법 저속	가사 저속	방송 부적	작사자 일북	왜색	표절	창법 저속	가사 저속
1977			3								
1978			3								2
1980			1		2	1	1	1			3
1981		2									
1983		21	6		37	1					1
1985			4								
1986			1								
1987			5								
계	95	275	162	90	336	43	78	75	49	15	188

[표 2]를 보면 1975년의 가사저속에 대한 금지사례가 예륜에 비해 방윤이 16곡이나 많다. 예륜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방윤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금지곡 중 사전심의를 통과한 후에도 몇몇 곡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후에 금지곡이 된 곡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송창식의 〈고래사냥〉과 〈왜 불러〉, 정미조의 〈불꽃〉, 신중현의 〈설레임〉, 김민기의 〈아침이슬〉 등이다. 이들 노래는 예륜의 3차례의 검열에서는 금지당하지 않았으나<sup>22)</sup> 방윤에 의해 방송 부적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금지되었다. 〈설레임〉은 금지를 면했으며 〈고래사냥〉과 〈왜 불러〉 등은 ‘적절하지 않음’이란 사유로, 나머지 3곡은 ‘사유 없음’이라는 이유로 금지를 당했다. 문옥배도 예륜의 이러한 금지조치들을 정치적 개입으로 보았다.<sup>23)</sup>

국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음반에 대한 과도한 심의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정권이라는 점과 1965년 한일협정 체결

22) 국가기록원, “공연활동정화계획,” 충청남도 아산군 문화공보실, 1975년, 철번호: BA00079 905, 건번호: 8-1, <https://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archivesDetail.do?flag=2&evntId=0049286877&page=8>, 검색일: 2021. 4. 10.

23) 문옥배, 『한국 금지곡의 사회사』, 145.

을 자행한 굴욕적 정권이라는 점이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안보와 경제성장을 내세운 이데올로기의 일환으로 대중음악에 대한 공연법과 음반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심의의 근거로 삼았다.

1975년, 공윤이 예륜을 대신하게 되고 공윤의 사전심의를 거쳐 방윤에 통보하는 구조가 확립되면서 공윤의 금지곡이 줄어들고 방윤의 금지곡 지정도 감소했다.<sup>24)</sup> 그 당시의 금지곡 지정이 특별한 사회적 이슈에 대항하기 위한 일시적 정치적 행위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러한 방송 심의를 위한 윤리규정의 내용은 매우 불명확한데 제57조와 제68조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5)</sup>

[그림 1] 방송심의 윤리규정<sup>26)</sup>

1. 윤 리 규 정

- 제 57조 표절한 작품은 이를 방송하지 아니한다.
- 제 64조 국가의 존엄과 민족의 긍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가사와 곡 (장법포함)은 방송하지 않는다.
- 제 65조 폭력적, 허무적, 엄세적으로 현저하게 어두운 인상을 주는 가요는 지한다.
- 제 66조 아침과 심야의 가요선곡은 그 생활시간에 적합하도록 특히 신중을 기한다.
- 제 67조 외국가요를 우리나라 가수가 부를경우 그 가사는 번역하여 불러야 한다.
- 제 68조 모티브가 같거나 모방이 짙은것도 표절로 간주하여 방송하지 아니한다.

24) 도표를 보면 1983년을 제외한 방윤, 공윤의 금지곡 지정은 매우 적다.

25) 국가기록원, “방송금지 가요 재심철,” 방송위원회 사무처 평가심의국 심의운영부, 1987년, 관리번호: DA0017379,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showDetailPopup.do?rc\\_code=1310377&rc\\_file\\_no=200802022521&rc\\_ritem\\_no=](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showDetailPopup.do?rc_code=1310377&rc_file_no=200802022521&rc_ritem_no=), 검색일: 2021. 4. 10.

26) 국가기록원, “방송금지가요 가사철 제1호-제450호,” 방송위원회 사무처 평가심의국 심의운영부, 1987년, 철번호: DA0017382, 건번호: 1-1, <https://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archivesDetail.do?flag=2&evntId=0049286897&page=11>, 검색일: 2021. 4. 10.

소위, ‘윤리규정’이란 것은 어떠한 텍스트도 마음만 먹으면 금지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만들어서 정권의 기초와 다른 모든 것들을 금지할 수 있는 ‘만능 금지 제조기’였다. 이러한 기초는 1987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한 6·29 민주화 선언을 기점으로 방송심의위원회에 의해 왜색가요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 때<sup>27)</sup>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

#### 4. 왜색가요로 분류된 금지곡의 특징

전통적인 미야코부시(みやこぶし-都節) 음계(상행: 미-파-라-시-레-미, 하행: 미-도-시-라-파-미)는 상행과 하행이 다르다. 이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권정구는 심의 기준에 언급된 ‘미야코부시 음계’를 전통적 해석과 현대적 사용에서 몰이해로 보고, 이를 ‘요나누키 단음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8)</sup>. 본고는 권정구의 주장을 따르며 금지곡의 기준이 된 ‘미야코부시 음계’를 ‘요나누키 단음계’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양우석의 분류방식에 따라 ‘요누키(라-시-도-미-파-솔-라)’, ‘나누키(라-시-도-레-미-파-라)’ 등의 음계명을 사용함을 밝혀둔다.

사실, 미야코부시 음계는 요나누키 단음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른바 ‘뽕짝 논쟁’의 주요 소재가 되었고, ‘트로트’와 ‘엔카’의 유사성 문제도 요나누키 단음계에 근거가 된 바가 많았다. 하지만 대중가요에서 상행과 하행이 다른 음계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음계 외에도 가수의 외모, 가사, 창법 등이 왜색이라는 질감을 느끼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권정구에 따르면 심의기구의 ‘금지곡지정’ 사유항목이 음계에 치중되어 있는데<sup>29)</sup>

27) 국가기록원, “방송금지 해제 가요 통보,” 방송위원회, 1987년, 철번호: DA0017379, 건번호: 19-1, <https://theme.archives.go.kr//next/chronology/archiveDetail.do?evntId=0049318988&flag=2&isPop=Y>, 검색일: 2021. 4. 10.

28) 권정구, “비공개 심의본에 나타난 왜색금지곡의 특징 분석,” 『한국민요학』 55 (2019), 26-27.

29) 권정구, “비공개 심의본에 나타난 왜색금지곡의 특징 분석,” 34.

이것은 손쉬운 금지를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요나누키 단음계로 만들어진 노래는 일부이며 오히려 ‘레’가 포함된 음계로 만들어진 곡들이 많았다.

해방 이후 ‘일제 청산’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어 1946년 1월부터 일본인에 대한 한국입국이 금지되고,<sup>30)</sup> 일본노래를 왜색곡으로 지정해서 금지했으며<sup>31)</sup>, 이승만 정부는 수립 이후 ‘반일’을 외교의 기치로 삼았다.<sup>32)</sup> 그러면서 일본 음반 사용금지와 함께 왜색음반 심의위원회(1958년)가 구성<sup>33)</sup>되면서 서서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 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외자도입을 목적으로 불공정한 한일수교가 성사됐다. 이에 정부는 불평등 조약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돌리기 위해 왜색금지곡을 지정하였으며,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대중음악의 방송가요 심의 기준에 그대로 표출된다.

박정희 정권하의 심의기구는 이러한 요나누키 음계에서 풍기는 왜색적인 질감을 반민족적이고 저속하며, 퇴폐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심의자들이 주관적으로 왜색판정을 한 점은 신뢰성 문제로 야기되었고,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정치적인 여건에 따라 편파적으로 왜색판정이 내려진 부분이 없지 않으며 1987년에는 대부분의 왜색가요가 금지곡에서 해제되었다. 당시 왜색가요에 대한 방송가요 심의세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왜인조선입국금지(倭人朝鮮入國禁止),” 『조선일보』, 1946. 1. 18.

31) 김성민, 『일본을 禁하다』 (파주: 글항아리, 2017), 14.

32) 산본공, “일본대중문화의 개방정책과 유입실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영화·방송·대중음악과 공연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04), 8.

33) 문옥배, 『한국 금지곡의 사회사』, 188.

[그림 2] 방송가요 심의세칙<sup>34)</sup>

## 1) 왜색가요

- (1) 미야꼬부시 음계는 일본 고유음계로 반민족적이고 저속, 퇴폐적인  
고로 이 음계의 곡은 우선 배격한다.
- (2) 리듬, 무드, 창법등은 사전 일률적으로 규정 짓기 곤란하므로 그때  
그때 곡을 청취하면서 일본무드의 강도 정도에 의하여 이를 배격한다.

박정희 정권의 심의세칙의 부당한 측면을 조명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왜색 금지곡들의 선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심의세칙은 소위 일본에서 유입된 요나누키 장·단 음계로 구성된 가요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 요나누키 단음계의 사용 빈도를 분석해서 심의세칙이 과연, 정당하게 적용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일문화의 비교에 있어서 음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 없이 일본의 5음음계를 왜색으로 단정 짓는 경우도 많다. 이는 일본의 엔카와 우리나라의 트로트가 유사한 선율구조를 사용하며, 둘 다 떠는 창법을 구사하는 데 기인하며, 동시에 서양의 리듬을 차용하고 있는 모양새가 일견 흡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전통음악에서 사용되는 선율에는 우조, 평조, 계면조 등이 있으며 이중, 우조와 평조는 요나누키 장음계와 유사하며 계면조는 요나누키 단음계와 비슷해서 한쪽을 수용한 상태에서 다른 쪽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럽다. 이러한 선율적 유사성은 우리나라에 일본식 유행가가 쉽게 수용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sup>35)</sup>

34) 국가기록원, “방송금지가요 가사철 제1호-제450호,” 방송위원회 사무처 평가심의국 심의 운영부, 1987년, 철번호: DA0017382, 건번호: 1-1, <https://theme.archives.go.kr/next/ta booAutonomy/archivesDetail.do?flag=2&evntId=0049286897&page=11>, 검색일: 2021. 4. 10.

35) 양우석, “박시춘 작품의 음악적 특징,” 71-72.

양우석은 ‘우조길’와 ‘평조길’이 ‘장조 5음 음계’와 흡사하며 ‘계면길’의 하청에 해당하는 계명 ‘미’라는 음은 농음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미’가 농음이 되면서 ‘파’의 질감을 발생시키므로 요나누키 단음계를 일본음계라고 단정짓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요나누키 단음계가 일제강점기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사용되지 않고 ‘레’를 자유롭게 사용하여<sup>36)</sup> 한국적 특징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sup>37)</sup>

비공개 심의본에 나와 있는 ‘87년 해금된 왜색곡’ 250여 곡 중에서 ‘곡 왜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악보가 있는 경우는 모두 33곡이며, 여기에서 사용된 음계는 모두 9종류이다.

[표 3] 방송금지 가사철 발췌 악보분석<sup>38)</sup>

번호	제목	가수 작사 작곡	페이지	일련 번호	사유	선율
1	황포돛대	이미자 백영호 이용일	102	제150호	곡 왜색	요나누키 장음계
2	갈매기	설영희 정귀문 김하양	132	제335호	곡 왜색	요나누키 장음계
3	무역선 아가씨	오은주 나은파 -	201	제393호	곡 및 창법왜색	요나누키 장음계
4	임의 목소리	고화영 조정한 진남성	204	제395호	곡 및 창법왜색	요나누키 장음계

36) 이러한 선율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대중가요는 매우 많다. 이에 관한 논의는 지면 관계 상 생략하지만, 단음계에서 4번째 음인 레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나누키 단음계라 명명한다.

37) 양우석, “박시춘 작품의 음악적 특징,” 72-75.

38) 본 논문에서 참고한 악보 및 분석은 비공개 심의본으로 한정하며, 방송금지 가사철의 악보가 있는 ‘곡 왜색’만을 발췌한 것이다.

번호	제목	가수 작사 작곡	페이지	일련 번호	사유	선율
5	종점 에서	- 고봉산 고봉산	205	제396호	곡 및 창법왜색	나누키 단음계
6	과거를 테리고	손진아 김중순 김영광	211	제402호	곡 왜색	나누키 단음계
7	왜 왔던가	남인호 손로원 김수현	212	제404호	곡 왜색	나누키 단음계
8	천리길	- - -	213	제 404호	곡 왜색	나누키 단음계
9	그이름	- 이철혁 이철혁	214	제405호	곡 왜색	나누키 단음계
10	사랑할때는	지영미 고 향 남국인	215	제406호	곡 왜색	나누키 단음계
11	오지않는님	나훈아 손 석 이 호	216	제407호	곡 왜색 및 창법왜색	요누키 화성 단음계
12	눈물의 현해탄	홍의주 김해송 김 송	221	제411호	곡 왜색	자연 단음계
13	안녕은 싫어	이대성 민 영 민인설	222	제412호	곡 왜색	화성 단음계
14	사실은 그게 아닌데	트위스트김 이이년 신일동	223	제413호	곡 왜색 및 가사저속	요나누키 단음계
15	바다 건너가는 마을	박재란 하중의 김강섭	225	제415호	곡 표절 및 왜색	요누키 장음계
16	이름 모를 그 여인	진성진 이정일 신대성	227	제417호	곡 왜색	나누키 단음계

번호	제목	가수 작사 작곡	페이지	일련 번호	사유	선율
17	눈물을 주고	나영희 - 김영광	228	제418호	곡 왜색	자연/화성 단음계
18	아무말말아 주오	이해성 심영택 -	229	제419호	곡 및 창법왜색	요나누키 단음계
19	오는 정이 있다면	임선아 조경원 이현섭	238	제428호	곡 왜색	요나누키 단음계
20	아실까 모르겠지	남원 조경원 이현섭	239	제429호	곡 왜색	나누키 단음계
21	사랑 한다고	진성진 김철강 김학송	240	제430호	곡 왜색	나누키 단음계
22	사랑하고 있는데	천석환 조경원 이현섭	241	제431호	곡 왜색	요나누키 단음계
23	나와 당신	한수정 김용만 김용만	242	제432호	곡 및 창법왜색	나누키 단음계
24	슬픈 목소리	하 경 심형섭 심형섭	243	제433호	곡 왜색	나누키 단음계
25	안녕은 서러워	민 주 고 향 남국인	244	제434호	곡 왜색	나누키 단음계
26	신혼의 그 사람	김부자 정주희 육옥명	247	제437호	곡 왜색 및 리듬유사	요나누키 장음계
27	돌아와 주세요	백일호 손장척 -	249	제438호	곡 왜색	화성 단음계
28	연평도 처녀	심수경 이정화 이정화	250	제439호	곡 왜색	나누키 단음계

번호	제목	가수 작사 작곡	페이지	일련 번호	사유	선율
29	소록도의밤	이한희 남기호 김초성	251	제440호	곡 왜색 및 가사애상	나누키 단음계
30	여자이기에	- 신동현 김기용	254	제442호	곡 왜색	나누키 단음계
31	울도록 버려두세요	김진미 지 천 김호길	256	제444호	곡 왜색	자연 단음계
32	이별의 두글자	원 기 황우루 임석호	257	제445호	곡 왜색	요나누키 단음계
33	후회는 없다	이성훈 조남수 조남수	262	제450호	곡 왜색	요나누키 단음계
음계			곡수	음계		곡수
요나누키 장음계 (도레미솔라)			4	요누키(라시도미파솔) /화성단음계		2
요누키 장음계 (도레미솔라시)			2	화성/자연단음계		2
요나누키 단음계 (라시도미파)			6	자연 단음계		1
나누키 단음계 (라시도레미파-계면풍)			13	화성 단음계		2
자연/화성단음계			1	계		33

## \*특이사항

- (5) 종점에서 - 26마디 '그리며'는 오기로 보임  
 (9) 그 이름 - 12마디 '길-래'는 오기로 보임  
 (26) 신촌의 그 사람 - 10마디 '어떻게 하나'는 오기로 보임  
 (25) 안녕은 서러워, (29) 소록도의 밤, (30) 여자이기에 - 계면조

금지된 33곡 중에서 장조는 6곡, 단조는 27곡이다. 단조가 많은 것은 한국 대중가요의 전반적인 특징인데 시대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도구로서 단조는 장조보다 매우 효과적으로 보인다. 단조 가요의 경우에서 전통선율의 계면길과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나누키 단음계(라-시-도-레-미-파의 6음 음계)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한국전쟁 이전 박시춘의 작품집 통계에서도 나누키 단음계는 122곡 중에서 28곡으로 제일 많았다. 이 조사의 결과를 모든 국내가요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왜색 논쟁’에 있어서 계면 풍의 선율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 가요의 전통성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나누키 단음계는 ‘라-시-도-미-파’의 5음 음계인데 국내의 트로트 가요를 분석해보면 대체로 ‘라-시-도-레-미-파’의 6음음계 구조가 많이 발견된다. <동백 아가씨>와 같이 잘 알려진 곡의 도입부가 요나누키 단음계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와 비슷한 선율구조를 가진 많은 가요를 요나누키 음계라고 일반화하는 인식은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조 5음 음계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계인데 이를 일본말인 ‘요나누키 장음계’로 칭하며 여기에 왜색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는 음악적 몰이해와 정권을 위한 지나친 충성이 유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장에서 강조하는 ‘나누키 단음계’는 ‘레’가 추가된 요나누키 단음계이다. ‘레’ 음의 빈도가 적다면 요나누키 단음계의 질감이 강할 것이다. 하지만 ‘레’ 음의 빈도가 높거나 강박에 사용될수록 그 작품의 질감은 엔카와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다. 이것은 한국 가요에서 많이 사용되며 전통음악과의 혼종화 과정에서 생긴 한국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세 곡은 ‘곡 왜색’이라는 이유로 금지되었지만 요나누키 단음계가 아니며 오히려 ‘레’를 중요한 음으로 사용한 경우들이다.

[악보 1] 〈중점에서〉

중점에서 〈곡 및 강법 왜색〉

제 376 곡  
(197. 7. 1 해례)

금지

내 아 강 - 은 - 내 - 기 로 는

받 - 정 - 은 - 강 - 인 가

아 무 언 관 - 듯 도 없 - 는 동 - 인 에

나 는 나 여 죽 - 어 볼 - 고 - 지 방 도 없

아 - - 기 - 강 - 받 - 카 - 로

저 나 비 - 인 사 람 가

내 이 능 으 - 는 어 네 한 - 정 은 중 - 강 - 세

205

[표 4] 〈중점에서〉의 구성 음별 중요도

중점에서	라	시	도	레	미	파	솔
Dm 나누키	16	19	14	3	16	8	0

[악보 2] <과거를 데리고>

<sup>금지</sup>  
 - \* 곡 의 색 으로는 금지  
 < ~~황변~~속 빛 곡패색 >  
 제 42호 (87.9.5 해제)

과거를 데리고

피로운 밤이 오네 가슴마흔 과거 데리고

몸부림 치는 눈-잔 그 사람은 아실까

진 정교 모르니까 모지 않느' - 다 그 밤이 다시 오네

가슴마흔 과거 데리고 아 - (f) - 정말 리로 워

211

[표 5] <과거를 데리고>의 구성 음별 중요도

과거를 데리고	라	시	도	레	미	파	솔
Em 나누키	13	9	10	7	19	18	0

[악보 3] <왜 왔던가>

2/4 왜 왔던가 <곡 왜색> 제 403호 (92.9.5 채택)

왜 왔던가 왜 왔던가 부 산향 제-미-부 두

뚝뚝 선 고동 소- 리 처량히 들-리-는- 데

밤비를 맞으면서 헤매는 환 길 판 날 길 없-는- 그 사 람을 찾아서

왜 왔던가 왜- 왔- 던- 가 내 아이- 앞- 던- 가

212

[표 6] <왜 왔던가>의 구성 음별 중요도

과거를 데리고	라	시	도	레	미	파	솔
Am 나누키	18	18	17	4	11	6	0

위의 곡들은 의도적으로 ‘레’를 사용하여 요나누키 단음계와 다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솔’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누키 단음계와 자연 단음계의 중간적인 음계라 할 수 있는 ‘나누키 단음계’이며 ‘계면조의 엇칭’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판소리에서 ‘외갓집 목’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선율구조를 가진 트로트 계통의 가요에서 외갓집 목(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에 ‘레’ 음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쉽게 발견된다.

하춘화의 〈영암 아리랑〉은 요나누키 단음계로 작곡되었음에도 계면조의 질감을 잘 살려 녹음된 대표적인 곡이다. 이처럼 대중가요 작품을 단순히 음계에 근거하여 왜색으로 분류하는 것은 대중문화에 대한 억압이며 음악적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유행가의 왜색을 논함에 있어서 음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창법, 구조, 리듬의 유사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므로 차후에 이러한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 기대한다.

## 5. 나가며

대중가요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금지곡은 정치적 억압의 산물이기도 하다. 본고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 금지곡으로 선정되었던 왜색가요의 선율적 특징을 분석하고 전통선율과 비교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수립된 60~70년대는 제3·4 공화국으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는 쿠데타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우선 과제였기에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발전 이데올로기로서의 음악 정책을 추진했다.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에게 정책적 선전을 위한 건전가요를 장려하는 한편, 금지곡 지정을 통해 억압하고 통제했다.

이러한 금지곡 지정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되었는데, 한일수교협정(1965) 이후인 1968년, 금지곡 수가 급증하였으며, 장기집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유신헌법(1972) 이후인 1975년에는 절정에 달했으며,

그 이후에는 금지곡 지정이 매우 미미해졌다. 이것은 대중음악의 통제가 정책적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볼 여지가 있다. 금지곡 지정으로 인한 빈 공간을 채우고자 이루어진 건전가요의 홍보는 친일이라는 색을 지우고자 노력했던 박정희 정권이 오히려 일제강점기의 음악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금지곡들의 선율적 구조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되었던 ‘요나누키 장·단음계’의 사용 빈도는 각각 1.12%와 18%로 조사되었다. 금지곡 지정은 ‘요나누키 장음계’로 된 곡보다 ‘요나누키 단음계’로 이루어진 노래들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레’가 포함된 요나누키 단음계인 ‘나누키 단음계’가 33곡 중에서 13곡으로 전체의 39.4%였다. 9가지 음계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음계는 우리 고유음계인 ‘계면길 선율’의 응용으로 볼 수 있다. 음악을 만들 때 사용되는 7개의 음 중에서 5개의 음정으로 이루어진 요나누키 음계가 주로 사용되는 점을 왜색이라고 단정해서 금지한 것은 노래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 유사한 일부분만을 문제 삼은 억압적 행위이다. 또한 음계를 왜색이라 낙인찍어서 금지곡 지정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제3공화국 정권 초기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편법이자 권력 남용이었다. 이외에도 창법이나 표절에 관한 부분도 연구자의 과제라 생각하며 지면 관계상 다루지 못한 부분은 이후의 연구에서 보강하고자 함을 밝힌다. 본고가 한국 대중음악계의 왜색문제에 관한 중요한 연구 작업의 작은 부분이 되길 바라고, 학계에서 여러 번 논의되어왔던 왜색 음계에 관한 논쟁 또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전통음악과의 깊은 비교연구 또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권정구. “대중음악 금지곡 중 왜색과 표절의 관계 고찰: 비공개 심의원본 자료를 중심으로.” 『음악과 문화』 39 (2018), 61-94.
- \_\_\_\_\_. “비공개 심의원본에 나타난 왜색금지곡의 특징 분석.” 『한국민요학』 55 (2019), 25-52.
- 김성민. 『일본을禁하다』. 파주: 글항아리, 2017.
- 김은경. “박정희체제의 지배양식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음악정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2010.
- 김은영. “1960~1970년대 음악정치: 박정희체제의 음악정책과 노래운동을 중심으로.” 『음악과 현실』 60 (2020), 87-118.
- 노동은. “『국민가요명곡집(國民歌謠名曲集) 해제.』 『낭만음악』 18 (1993), 243-248.
- 문옥배. 『한국 금지곡의 사회사』. 서울: 예술, 2004.
- \_\_\_\_\_. “해방 이후 정부의 음악통제 연구.” 『音樂論壇』 22 (2008), 25-64.
- 박찬호. 『한국 가요사 2』. 서울: 미지북스, 2009.
- 부길만. 『한국 출판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산본공.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정책과 유입실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영화·방송·대중음악과 공연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04.
- 양우석. “박시춘 작품의 음악적 특징.” 『음·악·학』 26 (2014), 65-102.
- 정진. “대중가요 작곡가 백영효의 작품 분석.” 『문화와 융합』 42 (2020), 635-663.
- “왜색레코드 단속.” 『조선일보』. 1964. 2. 1.
- “외인조선입국금지(倭人朝鮮入國禁止).” 『조선일보』. 1946. 1. 18.

- 국가기록원. “국무회의록.” 총무처, 1955년, 관리번호: BA0085175. <https://theme.archives.go.kr//next/cabinet/keywordSearchResultDescription.do?level=2&docid=0028640280>. 검색일: 2021. 4. 10.
- \_\_\_\_\_. “퇴폐 일본음반 금지의 건(제8회).” 총무처, 1953년, 철번호: BG0000049, 건번호: 8-14. <https://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archivesDetail.do?evntId=0049286817&flag=2&page=2>. 검색일: 2021. 4. 10.
- \_\_\_\_\_. “차방에서의 일본음반과 주류(위스키) 판매를 금지하도록 단속하여 주기 바란다(제12회).” 총무처, 1953년, 철번호: BG0000049, 건번호: 12-23. <https://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archivesDetail.do?flag=2&evntId=0049286816&page=>. 검색일: 2021. 4. 10.
- \_\_\_\_\_. “공연활동정화계획,” 충청남도 아산군 문화공보실, 1975년, 철번호: BA00079905, 건번호: 8-1. <https://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archivesDetail.do?flag=2&evntId=0049286877&page=8>. 검색일: 2021. 4. 10.
- \_\_\_\_\_. “방송금지 가요 재심철.” 방송위원회 사무처 평가심의국 심의운영부, 1987년, 관리번호: DA0017379.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showDetailPopup.do?rc\\_code=1310377&rc\\_rfile\\_no=200802022521&rc\\_ritem\\_no=](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showDetailPopup.do?rc_code=1310377&rc_rfile_no=200802022521&rc_ritem_no=). 검색일: 2021. 4. 10.
- \_\_\_\_\_. “방송금지가요 가사철 제1호-제450호.” 방송위원회 사무처 평가심의국 심의운영부, 1987년, 철번호: DA0017382, 건번호: 1-1. <https://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archivesDetail.do?flag=2&evntId=0049286897&page=11>. 검색일: 2021. 4. 10.
- \_\_\_\_\_. “방송금지 해제 가요 통보.” 방송위원회, 1987년, 철번호: DA0017379, 건번호: 19-1. <https://theme.archives.go.kr//next/chronology/archiveDetail.do?evntId=0049318988&flag=2&isPop=Y>. 검색일: 2021. 4. 10.

Abstract

**A Study on the Melodic Characteristics of  
Prohibited Songs during the Military Regime**

PARK GISUN

This article analyzed songs that correspond to Japanese songs among the ban imposed during the Park Chung-hee military regime. This paper starts from the possibility that the Yonanuki (or Miyakobushi) scale, which some claim, functioned as a stigma symbolizing Japanese style distortion. The banned songs of the period were analyzed to see if the so-called Japanese style songs were made up of the Yonanuki scale, and if there were any parts that were mistaken for similarities to traditional scales even though they were not the Yonanuki scale.

Park Jung-hee has a strong aspect of using banned songs to secure his political legitimacy in the coup and soothe the anti-Japanese sentiment that occurred since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In other words, the policy on popular songs during this period was used as an important medium for propaganda, and he encouraged sound songs to maintain the regime and excluded banned songs. Such activities have relation with Park Chung-hee's pro-Japanese history, and the banned songs have been used as tool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is article assumes that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ban on distortion is related to ideology or political situations examined the role of the review organization and the meaning of changes in prohibited items and analyzed the melody structure of 33 Japanese styled songs with traditional melody.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fact that banned

songs were branded as Japanese style was an excessive act for political purposes and understanding of the melody structure.

Nevertheless, it is revealed that it was an excessive political act to label as Japanese style because of partial similarities.

Key Words: Park Chung-hee, The Military Regime, Popular Songs, Japanese Style Songs, Yonanuki, Banned Songs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14일	2021년 4월 16일~6월 21일	2021년 6월 22일

DOI 10.34303/mscol.2021.29.1.002